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11. 2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



1. 건 명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64조,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84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서류의 명칭 | 서류의 주요내용 | 공시송달 내용 |
|-----|------------|--------------------------------|------------------------|------------------|--|
| 김○오 | 1994.6.12. | 부산광역시 사상구 냉정로 120 (이하생략)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 - 통 결정서를 2021.10.22., 2021.10.29. 두 차례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불가(폐문부재) -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 청구 할수 있으며 심사 청구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정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 청구가능 |

4. 공고기간 : 2021. 11. 23. ~ 2021. 12. 07.(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북부고용센터(3층) 실업급여팀 담당자 손창수 주무관(전화 051-330-9853)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